

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3월 10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3월 10일

3. 제안이유

자치행정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공정성, 투명성 확보와 위법·부당한 행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 감사청구제도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사청구 주민수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가. 감사청구 주민수(안 제2조)

- 전년도 12월 31일현재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,000분의 1 이상

나.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(안 제3조)

-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위촉(임명)
-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.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주민 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감사청구 주민수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

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,000분의 1이상으로 하였고,

감사청구심의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되 구성요건이 유사한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차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수렴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의 적절한 규모결정이 본 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(안)